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 의무 부과 및
전문기관의 대행 근거 마련 〉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58호)

2026. 3.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 의무 부과 및 전문기관의 대행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2
※ [참고1] 유사 입법례	9
[참고2]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1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30.

다. 회 부 일 : 2026. 2.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제개발협력의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그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외교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 의무 부과 및 전문기관의 대행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과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5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u>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일반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¹⁾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인 “양자간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의미하며,

같은 법 제12조²⁾에서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를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기관”³⁾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문화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⁴⁾.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기본원칙)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시행기관(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대외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헌장의 제반 원칙 존중
2. 개발도상국의 자조노력 및 능력 지원
3.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존중
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
5. 국제사회와의 상호조화 및 협력 증진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에 총 111억 7,800만원 수준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사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몽골·필리핀·인도네시아 문화예술교육, 한국도서관문화재단의 몽골 공공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등이 있음⁵⁾.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바와 같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사업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全) 주기에 걸친 정보와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② 주관기관은 개별 시행기관이 소관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참조

개정안을 통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국제개발협력”은 현행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현행법”이라 함)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로서,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 법률(「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입법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아울러, 현행법 제12조6)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6)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취소 및 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 있고(제1항),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제3항), 지정 취소 시 청문에 관한 사항(제4항),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제5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에 관한 사항(제6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여 개정안의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⁷⁾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며, 개정안에 따른

7) 유사입법례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도 국제농업협력사업(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경비 출연·보조, 지정 취소, 지정 취소 시 청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추가재정 소요를 7억 5,000만원으로 추계함⁸⁾.

국무조정실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의 필요성·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법제화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분절화·중복 문제를 더욱 고조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법이 아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체계 안에서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집중 추진하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및 제12조⁹⁾에 따라 재정경

8)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안)

예산 내역	산출근거
인건비 (100백만원)	○ 전담 인력 2명(50백만원×2명, 고용부담금 포함)
연구 (200백만원)	○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 연구 100백만원 ○ 국제개발협력 추진 전략 연구 100백만원
위탁용역 (350백만원)	○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 300백만원(60백만원×5건) ○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50백만원
기타 운영비 (100백만원)	○ 전문가 활용비용, 평가 출장 여비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8. “시행기관”이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제부장관 또는 외교부장관이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으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는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전문기관을 두도록 하는 등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중복 입법에 해당하고, 현행법 제12조¹⁰⁾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관련 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¹¹⁾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379

10)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2.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 ⑥ (생략)

11)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참고 1

유사 입법례

법률명	조문내용(조항)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국제개발협력의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외 해양수산자원의 안정적 확보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연안 개도국의 경제발전 등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u>해양수산 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u>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u>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u>하게 할 수 있다.
해외농업·산림 자원 개발협력법	제30조(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외국과의 농업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u>국제농업협력사업의 촉진</u>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31조(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산림청장은 외국과의 산림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u>국제산림협력사업의 촉진</u>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2(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u>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u>”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산림청장은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u>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u>”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관리·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참고 2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의 ‘-’ 표시는 유네스코위원회 등이 수행하는 사례임

연도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사업기간, 총사업비, 당해연도 예산)
‘24년	10,572 백만원	-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기금 납부(2021~, 72백만원) -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대상 정규분담금의 1% 납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2023-2027, 60억원, 760백만원) -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청년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2023-2025, 18억원, 600백만원) - (몽골) 인형극 등 현지 전통문화기반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필리핀) 문화센터 중심 전문인력 역량강화 -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대상 전통 가면극 기반 문화예술교육 지원
		한국도서관문화재단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2023-2026, 64.18억원, 2,279백만원) - 울란바토르 시립도서관 신축, 도서·기자재 지원, 사서역량강화 등
		-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지원(2006~, 958백만원) - 개도국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한국관광공사	○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사업(2014~, 1,110백만원) - 개도국 관광지도자 대상 초청 연수 등 한국관광 발전 경험 공유
		-	○ 세계관광기구(UNWTO) 분담금 납부(1975~, 285백만원) - 세계관광기구 회원국 분담금
		한국예술종합학교	○ AMA+(Art Major Asian plus) 장학사업(2006~, 1,421백만원) - 개도국 예술인재 선발 한예종 학·석사학위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2022-2025, 60억원, 1,440백만원) - 키르기스공화국 및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IT역량강화 등
		한국관광공사	○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사업(2023-2027, 38.66억원, 540백만원) -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선정 및 종합계획, 공동체 구성, 관광기반 시설 확충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캄보디아 예술교육 플랫폼 구축(2022-2024, 70.5억원, 398백만원) - 캄보디아 예술교육연구원 건립,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문화동반자 사업(문화행정가)(2005~, 258백만원) - 개도국 공무원 등 대상 연수 통한 자국 문화산업 진흥 공공문화 정책 개발 역량 강화 지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문화동반자 사업(문화전문가)(2005~, 451백만원) - 개도국 문화 분야 전문가 연수 통한 사업화 기획 역량 강화 지원

연도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사업기간, 총사업비, 당해연도 예산)
'25년	11,178 백만원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기금 납부(2021~, 120백만원) -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대상 정규분담금의 1% 납부
		-	○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2007(격년)~, 496백만원) - 개도국의 문화창의산업 발전 관련 사업 지원 등
		한국콘텐츠 진흥원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2023-2027, 60억원, 1,840백만원) -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청년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양성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문화예술교육(2023-2025, 18억원, 600백만원) - (몽골) 인형극 등 현지 전통문화기반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필리핀) 문화센터 중심 전문인력 역량강화 - (인도네시아) 취약계층 대상 전통 가면극 기반 문화예술 교육 지원
		한국도서관 문화재단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2023-2026, 64.18억원, 2,051백만원) - 올란바토르 시립도서관 신축, 도서·기자재 지원, 사서역 량강화 등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지원(2006~, 958백만원) - 개도국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한국관광공사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사업(2014~, 1,090백만원) - 개도국 관광지도자 대상 초청 연수 등 한국관광 발전 경험 공유
		-	○세계관광기구(UNWTO) 분담금 납부(1975~, 374백만원) - 세계관광기구 회원국 분담금
		한국예술 종합학교	○AMA+(Art Major Asian plus) 장학사업(2006~, 1,289백만원) - 개도국 예술인재 선발 한예종 학·석사학위 지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2022-2025, 60억원, 2,160백만원) - 키르기스공화국 및 라오스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IT역량강화 등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몽골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2025-2028, 30억원, 200백만원) - 몽골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화콘텐 츠 공동개발, IT 역량강화 등

연도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사업기간, 총사업비, 당해연도 예산)
'26년	9,533 백만원	-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기금 납부(2021~, 123백만원) - 문화다양성 협약 당사국 대상 정규분담금의 1% 납부
		한국콘텐츠진흥원	○ 인도네시아 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 양성(2023-2027, 60억원, 1,200백만원) -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청년 디지털콘텐츠 제작자 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라오스 어린이 문화센터 운영체계 수립(2026-2028, 20억원, 525백만원) - 예술교육 거점시설의 활용도 제고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지속 가능한 정책전달 체계 마련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인도네시아 초중등 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2026-2028, 20억원, 525백만원) - 공교육 중심 예술교육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한국도서관문화재단	○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 지원(2023-2026, 64.18억원, 1,263백만원) - 올란바토르 시립도서관 신축, 도서·기자재 지원, 사서역량강화 등
		-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지원(2006~, 1,558백만원) - 개도국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
		한국관광공사	○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연수사업(2014~, 1,080백만원) - 개도국 관광지도자 대상 초청 연수 등 한국관광 발전 경험 공유
		한국관광공사	○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조성사업(2023-2027, 38.66억원, 486백만원) - 필리핀 루손섬 관광두레 시범마을 선정 및 종합계획, 공동체 구성, 관광기반 시설 확충
		-	○ 세계관광기구(UNWTO) 분담금 납부(1975~, 417백만원) - 세계관광기구 회원국 분담금
		한국예술종합학교	○ AMA+(Art Major Asian plus) 장학사업(2006~, 1,556백만원) - 개도국 예술인재 선발 한예종 학·석사학위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몽골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강화(2025-2028, 30억원, 800백만원) - 몽골 디지털문화자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IT 역량강화 등